

Tax book value for business spin-offs and acquisitions ^{P1}

Ratification of renegotiated UAE and Singapore tax treaties – pending exchange of notification ^{P2}

Recording and Bookkeeping for certain taxpayers ^{P3}

Electronic signature for tax matters ^{P4}

기업분할 및 인수 시 세무상 장부가액 / Tax book value for business spin-offs and acquisitions

재무부(MoF)는 최근 기업 합병, 통합, 분할 및 인수 시 자산 이전/인수에 세무상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PMK-56¹ 을 발행하였습니다. PMK-56은 국영기업(SOE), 기업공개(IPO)를 수행하는 납세자, 은행의 고정사업장(PE)의 구조조정에 적용되는 기업분할 및 인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분할

PMK-56에 따라 자산 이전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관련 분할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a. 기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새 회사를 설립하고 자산 및 부채(A&L)의 일부를 새 회사로 이전;
- b. 자산/부채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 i)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 ii) 기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 iii)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분할거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규정**
- c. 둘 이상의 기존 회사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이전하여 기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 - **신설규정**

¹ MoF Regulation No.56/PMK.010/2021 (PMK-56) dated and effective from 4 June 2021 as an amendment to MoF Regulation No.52/PMK.010/2017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205/PMK.010/2018

위의 (b) 및 (c)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정부로부터 추가 자본을 확보하고 분할하는 SOE가 SOE의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또는
- b. 분할을 수행하는 SOE (단, 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함)
 - i) 해당 구조조정이 2021년 1월1일 이전 시행됨;
 - ii) 주식양도거래가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거래되지 않음;
 - iii) 구조조정 및 자산의 양도 거래가 국영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

기업분할에 대한 모든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 신청은 분할법인이 하여야 합니다.

IPO를 수행하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IPO는 세무상 장부가액이 승인된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기존 재무부규정상은 1년 적용). 이 조항은 SOE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합병

PMK-56은 인수합병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 a. 은행 PE의 자산/부채를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회사(*Wajib Pajak Dalam Negeri/WPDN*)에 이전하고, 해당 PE는 소멸되는 구조의 은행 PE 인수(이전에는 합병으로 설명); 또는
- b. SOE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기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WPDN의 자산을 다른 WPDN으로 이전하는 경우:
 - i) WPDN의 소유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납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 ii) 인수한 회사가 현재 인도네시아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PT 회사인 경우;
 - iii) 구조조정이 FY21 초까지 진행됨;
 - iv) 양도거래가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
 - v) 구조조정 및 자산의 이전이 국영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

상기 (a)에 따른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 신청은 “양수회사(receiving entity)”가 해야 하고 (b)의 경우 “양도회사(transferring entity)”가 해야 합니다.

UAE 및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재협상 사항에 대한 비준 – 통지서 교환 절차 대기중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 조세조약과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조세조약 비준과 관련해 PR-34²와 PR-35³ 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세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와 UAE는 먼저 조세조약을 비준해야 하고, 이후 양국은 비준에 관한 통지서를 교환해야 합니다. 통지서 교환이 완료되면 조세 조약이 발효되며 발효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Indonesia – UAE 조세조약

2019년 7월 24일 인도네시아와 UAE는 재협상된 조세조약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5월 5일 인도네시아는 PR-34를 통해 조세조약을 비준했으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 a.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수수료에 대해 5%의 원천세 부과;
- b.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탄소세 과세; 및
- c. 이자원천세 5%에서 7%로 인상

다자간 협정에 따라 수정된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기의 수정사항도 재협상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 a. 고정사업장(PE) 정의의 확장;
- b. "Principle Purpose Test"의 도입;
- c. 양도소득(Capital Gains) 과세 권한에 대한 변경.

Indonesia – Singapore 조세조약

2020년 2월 4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재협상된 조세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인도네시아는 PR-35 발행을 통해 조세 조약을 비준했으며, 해당 조세조약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Flash No.02/2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² Presidential Regulation No.34 Year 2021 (PR-34) dated and effective from 5 May 2021

³ Presidential Regulation No.35 Year 2021 (PR-35) dated and effective from 11 May 2021

특정납세자("Certain Criteria Taxpayer")의 장부기장 및 기록 (Recording and Bookkeeping)

국세기본법(*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KUP*)에 따라 사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기장("Bookkeeping")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 납세자는 입출납에 대한 "기록"("Recording" "*pencatatan*")만 수행하면 됩니다.

Recording

GR-9⁴ 에 따라 입출납에 대한 "Recording"을 할 수 있는 특정 개인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 매출액이 IDR 4.8 billion 미만이고 간주수익율 방식을 사용하여 과세소득 산정 및 관련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납세자("deemed method taxpayer");
- 사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 직원); 또는
- 특정 기준("특정납세자")을 충족하는 경우 - **신설**

상기 (c)와 관련하여 PMK-54⁵ 는 다음과 같은 개인납세자를 "특정납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업활동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수행하고;
- 총매출액이 IDR 4.8billion 미만으로 모든 매출액이 Final Tax 납부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인 경우.

위의 (a)에서 (c)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자는 사업활동/프리랜서 활동이 아닌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일반 과세 기준이 되는 총매출(및 공제가 가능 비용)에 대해서 여전히 "recording"을 하여야 하며, Final Tax 또는 비과세소득에 대한 기록도 포함해야 합니다. (a)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일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프리랜서 활동의 총매출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GR-9 에 새로 추가된 상기 "특정납세자"는 FY21 부터 "Recording"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⁴ Government Regulation No.9 Year 2021 (GR-9) dated and effective from 2 February 2021

⁵ MoF Regulation No.54/PMK.03/2021 (PMK-54) dated and effective from 2 June 2021

현금기준 장부기장

PMK-54 는 2022 회계연도(FY22)부터 "발생기준" 대신 "현금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한 기준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영세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상업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기장을 수행해야 하는 자; 및
- b. "Deemed method taxpayer"에 해당하는 자로, "Recording"을 선택하는 "특정납세자" 또는 법인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이 IDR 4.8 billion 미만인 납세자.

납세자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또는 그 반대로 1 회에 한하여 전환이 가능합니다. FY22 부터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기장을 유지하는 개인납세자는 향후 "Recording" 방식을 사용하거나 "Deemed Metho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 제출

"Deemed Method Taxpayer"만이 Deemed Method 를 사용할 수 있고 "Recording"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기준"을 사용하려는 납세자는 연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절차는 PMK-54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신고를 위한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 for tax matters

재무부(MoF)는 납세자와 국세청(DGT)을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PMK-63⁶을 발행했습니다.

PMK-63 은 전자서명의 두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a. 인증된 전자서명(eSign)
인증된 eSign 은 통신 및 정보 기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Kominfo*)에 등록된 공급자가 발행하는 Electronic Certificate("EC")으로써 재무부가 EC Provider 로 지정한 자의 전자서명.
- b. 인증되지 않은 전자서명(eSign)
동 전자 서명은 DGT 에서 발급한 인증 코드를 사용함.

⁶ MoF Regulation No.63/PMK.03/2021 (PMK-63) dated and effective from 8 June 2021

납세자는 DGT 와 관련된 과세 권리 및 의무에 관련하여 전자서명(인증여부 무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전자서명은 DGT 가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특정 전자문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PMK-63 에 규정된 채널을 통해 또는 DGT 에 신청서(Manual Form)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Sign 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는 DGT 웹사이트, 연락처 또는 DGT 시스템에 통합된 기타 웹사이트/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T 는 문서가 완전히 제출되면 전자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완성된 전자 문서는 수동 서명으로 완성된 하드카피 문서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과세부과 결정, 고지, 징수 등과 관련된 전자문서 발급에 대해 DGT 는 DGT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전자이메일 발송, DGT 시스템에 통합된 기타 웹사이트/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DGT 에서 발행한 전자세금식별자(예: EC, EFIN 및 인증 코드)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고, eSign 적용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DGT 규정에 따릅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Sujadi Lee
sujadi.lee@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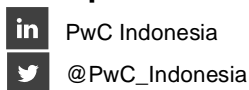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1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